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2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

2. 개정이유

- 강화군 행복센터 센터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계획 수립·추진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복지재단 인사규정의 관련 조항을 신설함.

3. 주요내용

- 인사규정 제8조(인사위원회 기능) 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수탁시설의장 채용에 관한 사항

제15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1월 28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

